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93
----------	------

발의연월일 : 2016. 10. 31.

발의자 : 김종석 · 전희경 · 김성태
김선동 · 윤한홍 · 경대수
김학용 · 김광림 · 정태옥
김한표 의원(10인)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관의 제·개정 등(안 제54조의3)

금융회사의 개별약관 제·개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함.

나. 약관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 신설(안 제58조)

제54조의3에 따른 약관 작성방식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4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제5항 중 “제1항”을 “금융위원회는 제2항”으로, “금융위원회는”을 “경우에”로 한다.

제54조의3제8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제5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개정한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 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 자의 권리와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u>미리</u> <u>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u> <u>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u> <u>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u> <u>다.</u></p> <p><u>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 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u></p> <p><u>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 대로 사용하는 경우</u></p> <p><u>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 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 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u></p>	<p>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 ----- ----- ----- ----- ----- <u>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u> <u>아니 된다. <단서 삭제></u></p> <p><u>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u></p> <p><u>2.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이용 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 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사항</u> <u><삭 제></u></p>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

<삭제>

<삭제>

② -----
-----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 다만, 금융이
용자의 권리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약
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 경
우에 -----

<p>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 ⑦ (생 략)</p> <p>⑧ <u>제1항</u>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p> <p>제58조(과징금) ① ~ ④ (생 략)</p> <p><u><신 설></u></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p>	<p>-----.</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제2항</u>-----</p> <p>-----</p> <p>-----</p> <p>-----</p> <p>-----</p> <p>-----.</p> <p>제58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제5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 개정한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⑥ ----- <u>제5항</u>-----</p> <p>-----</p> <p>-----</p> <p>-----</p> <p>-----</p> <p>-----.</p> <p>⑦ ----- <u>제5항</u>-----</p>
--	--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